

●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-1605호

「공공주택특별법」 제40조의7 제5항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『덕성여대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』에 대하여, 동법 제40조의7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예정지구 해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2월 26일

국토교통부장관

덕성여대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해제

1. 복합지구의 명칭, 위치 및 면적

명 칭	위 치	면 적(m ²)	제안자	예정지구 지정일 (공고번호)	비고
덕성여대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	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486-107번지 일원	39,276m ²	(명칭)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(주소)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(충무공동)	2021.12.07 (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1-1716호)	

2. 예정지구의 해제일 : 2022년 12월 26일

3. 해제 사유

「공공주택특별법」 제40조의7 제6항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(2021.12.07.)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어 지정제안을 반려함.

4. 관련도면

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의 해제 지형도면(S=1:1,200) : 게재 생략